

등록번호	여성가족과-3881
등록일자	2015.1.30.
결재일자	2015.2.3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보육지원팀장	여성가족과장	복지환경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유진영	신선애	유정택	유용렬	김찬곤	02/03 최창식
협 조	주무관 의회법제팀장 기획예산과장	권명주 문성수 장형태			

## 『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』 개정계획



서울중구

복지환경국  
여성가족과

# 요 약 지

## 『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』 개정계획

### □ 개정목적

- 영유아보육법령 개정(2013. 6. 4. 및 2013.12. 5.)에 따라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준수하고 어린이집 투명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며, 보육정보센터를 「육아종합지원센터」로 변경하여 어린이집과 육아지원의 기능확대를 도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조문의 미비사항을 보완·정비하고자 함.

### □ 주요내용

- 보육정보센터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정비
- 법 위반 어린이집 위반사실 공표로 지도감독 강화
- ‘종사자’ 명칭을 ‘직원’으로 ‘보육시설’ 명칭을 ‘어린이집’으로 변경
- 그 밖에 영유아보육법령에 맞추어 조례내용 일부 정비

### □ 추진일정

- 조례개정 방침수립 : 2015. 1월
- 성별영향분석 및 부패영향평가, 규제사전심사 : 2015. 2월
- 입법예고 : 2015. 2월
- 조례·규칙심의회 : 2015. 2월
- 구의회 조례안 제출 : 2015. 2월 ~ 3월 중 [구의회 회기운영시]
- 공 포 : 구의회 회기운영에 따라 추후확정

# 『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』 개정계획

영유아보육법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준수하고 보육정보센터를 「육아종합지원센터」로 변경 및 어린이집 투명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등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조문의 미비사항을 보완·정비하고자 함

## I 큰 거

- 영유아보육법, 영유아보육법 시행령,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

## II 개정 이유

- 보육정보센터를 「육아종합지원센터」로 확대·개편에 따른 정비
  - 기존 보육정보센터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되고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 확대된 기능을 반영하여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.
- 어린이집 「위반사실의 공표 등」 시행에 따른 보완 필요
  -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운영정지·어린이집 폐쇄 처분을 받은 시설과 아동학대로 자격정지·취소처분을 받은 원장 및 보육교사 명단의 공표
  - 위반내역 및 명단은 지자체·복지부·보육관련 홈페이지와 아이사랑보육포털 내 정보공개 시스템에 공개사항 등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내용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보완.

## III 주요 내용

- 보육정보센터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정비  
(안 제2조, 제6조, 제24조~제29조, 제33조) : 법 제7조[개정 2013. 6. 4.]

- 법 위반 어린이집 위반사실 공표로 지도감독 강화  
(안 제23조의 2) : 법 제49조3 [본조신설 2013. 6. 4.]
- '종사자' 명칭을 '직원'으로, '보육시설' 명칭을 '어린이집'으로 변경  
(안 제2조, 제3조, 제26조) : 법 제2조[개선사항]
- 그 밖에 '영유아 보육법령' 에 맞추어 조례내용 일부 정비

## IV 추진 일정

- 조례개정 방침수립 : 2015. 1월
- 성별영향분석, 부패영향평가, 규제사전심사 : 2015. 2월
- 입법예고 : 2015. 2월 [20일간]
- 조례·규칙 심의회 : 2015. 2월 중(관련부서 협의)
- 구의회 조례안 제출 : 2015. 2월 ~ 3월(구의회 회기운영시)
- 공 포 : 구의회 회기운영에 따라 추후확정

## V 참고 사항

- 관계법규 : 영유아보육법, 영유아보육법시행령,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등
- 예산조치 : 비예산
- 합의사항 : 합의 불필요

붙임 : 1.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 1부.  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